

제 2026-03 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 명 : 미 상

주 소 : 불 명

2026년 7월 27일, 귀하 소유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유수면에 설치한 불법 어구를 2026년 8월 10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구에서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및 제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대집행 일시	행정대집행 책임자			행정대집행 비용(추산액)
	소속	직위(직급)	성명	
2026년 8월 11일 ~ 철거완료시까지	영종구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최점호	집행 후 산정

2026년 7월 27일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

